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나56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나561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가단60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7. 5.

판결선고 2022. 8.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가단60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가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참조).

나.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21. 6. 10.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21. 6.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2021. 8. 6. 형기종료로 출소를 하였으며, 2021. 8. 25. 원고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9. 2. 판결등본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1. 9. 2.경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2021. 9. 7.자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E(D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는 공동주택개발사업에 수회에 걸쳐 합계 44,900,000원을 투자하면서 그 투자시마다 아래와 같이 D 및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

- 1) 원고는 2015. 3. 6. D와 사이에 당진시 F 중 33.05㎡를 매매대금 11,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는 G이었다.
- 2) 원고는 2015. 5. 4. D와 사이에 당진시 C 중 16.52㎡를 매매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는 G이었다.
- 3) 원고는 2015. 9. 11. E과 사이에 당진시 F 중 17㎡를 매매대금 6,6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는 피고였다.
- 4) 원고는 2015. 12. 30. E과 사이에 당진시 F 중 17㎡를 매매대금 6,6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는 피고였다.
- 5) 원고는 2016. 2. 29. E과 사이에 당진시 F 중 20㎡를 매매대금 8,28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는 피고였다.
- 6) 원고는 2016. 3. 25. E과 사이에 당진시 F 중 13㎡에 관하여 투자금액을 5,520,000원으로 하는 공동주택 사업투자 계약을 작성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는 피고였다.

나. 원고는 위 투자금 합계 44,900,000원에 관하여 하나의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2016. 3. 28. E과 사이에 당진시 C 중 116㎡에 관하여 44,9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사업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E의 대표이사는 피고였다.

다. 원고는 2019. 9.경 ‘피고가 H와 공모하여 유령의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아파트 시행이나 시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내면 아파트를 시행 시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사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은 물론 원금과 수익금을 많이 준다고 속여 합계 44,9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 8. 13. ‘피해자가 최초로 돈을 송금한 이후인 2015. 7. 29.에 비로소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H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H 등과 함께 당진시 I동에서 추진하려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12. 20.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7고합88호 사건에 병합된 2019고합194, 2019고합261 사건)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5.경 D에 입사하며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다가 2014. 11. 퇴사하였고, 2015. 3.경 재입사한 후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 또는 E의 판매 직원으로서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44,900,000원을 공동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아파트는 물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 28.자 공동주택 사업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계약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H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2014. 5.경 입사하여 경산시 소재 토지에 투자하고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았다. D의 서울 J동 사무실이 2014. 7.경 서울 K동으로 이전하면서 원고는 3개의 영업본부 중 L가 운영하는 1본부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4. 11. 퇴사하였고, 그 후 2015. 3. 재입사하여 L 운영의 1본부에 소속되어 당진시 소재 토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여 수당을 지급받았고,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8.경 입사한 후 D의 3본부에서 상무로 일하다가 2014. 12.경 영업부진으로 3본부가 없어진 후 H 회장의 지시로 유통업을 준비하다가 H 회장의 부탁으로 2015. 7. 29. E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7. 29. 이전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2016. 3. 28.자 계약서는 계약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H 회장의 지시로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통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다.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원고에게 E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형, 판사 이상아, 판사 조성필